



2015. 12. 14(월) 11:00
회의실(동해시청2층)

대표협의체 회의자료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 차

▣ 회의개요	1
▣ 논의사항	
○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
▣ 보고사항	
○ 2015년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실적 보고	3
▣ 심의·의결사항	
○ 2016년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계획(안) 심의	9
○ 2016년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승인(안) 심의 ·	16
▣ 기타사항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5. 12. 14.(월) 11:00
- 장 소 : 회의실(동해시청 2층)
- 참석대상 : 20명
- 주요내용

<의안1>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의안2> 2015년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실적 보고

<의안3> 2016년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계획(안) 심의

<의안4> 2016년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승인(안) 심의

○ 진행순서

시 간		소요 시간 (120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1:00	11:05	5	개 회	복 지 담 당
11:05	11:15	10	위 축 장 수 여	공 공 위 원 장
11:15	11:20	5	인 사 말 씀	공 공 위 원 장
11:20	12:35	15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대표협의체 위원장
11:35	11:40	5	2 0 1 5 년 사 업 실 적 보 고	협 의 체 간 사
11:40	11:50	10	2016년 협의체 운영계획(안)심의	실무협의체위원장
11:50	12:00	10	2 0 1 6 년 협 의 체 예 산 심 의	실무협의체위원장
12:00	13:00	60	오 찬	참 석 자 전 체
13:00			폐 회	사 회 자

〈의안1〉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15.9.1일 출범한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민간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근 거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2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지자체의 장(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도록 함.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함.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나. 「동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3항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임 기 : 2년 (2015.9.1 ~ 2017.8.31.)

3. 역할 및 의무

가. 대표협의체 위원장

-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나.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선출방법 : 대표협의체 위원 중 호선

<의안2>

2015년 협의체사업 실적 보고

1. 회의운영

가. 대표협의체

- 대표협의체 위원 : 20명
- 회의개최 : 3회(대면 2회 / 서면 1회)
- 심의·의결 건 : 9건

일 자	안 건	참석인원
02.27	2014년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 및 결산 승인	15
	2015년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계획	15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지급 계획	15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15
	2015년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계획	15
	2015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추진계획	15
03.18	2014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보고서 심의	14
12.14	2016년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2016년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	

나. 실무협의체

- 실무협의체 위원 : 18명
- 회의개최 : 14회 (대면 4회 / 서면 10회)
- 심의·의결 건 : 40건

	안 건	참석인원
02.24	부양의무자 가족관계단절에 따른 보호 적정성 심의	12
	긴급지원사업 사후조사결과 심의-적정성 심의	12
03.04	긴급지원의료지원 사후조사결과 심의-추가연장결정심의	12
03.17	2015년 1분기 자활기금 용자대상자 심의	13
04.07	긴급복지지원의 지원연장 결정	13
	자활기금 용자금 결손 및 면제 처분 심의	13
	자활기금 용자금 이행연기 특약체결의 심의	13
	자활기금 용자금 상환기간 연장 심의	13
04.22	부양의무자 가족관계단절에 따른 보호 적정성 심의	12
	긴급지원사업 사후조사결과 심의-적정성 심의	12

05.07	긴급지원의료지원 사후조사결과 심의 - 추가연장 결정 심의	14
	긴급지원의료지원 사후조사결과 심의 - 추가연장 결정 심의	14
	부양의무자 가족관계단절에 따른 보호 적정성 심의	14
06.16	지활기금 용자금 - 용자금 감면 및 결손처리 결정 심의	14
	2분기 지활기금 용자금 - 용자 대상자 적격 및 지원 금액 결정 심의	14
	2분기 지활기금 용자금 - 용자금 감면 및 결손처리 결정 심의	14
	2015년 6월 긴급지원사업 사후조사 결과 심의 - 적정성 심의	14
07.20	지활기금 용자금 - 용자금 감면 및 결손처리 결정 심의	16
	긴급지원생계지원 사후조사결과 심의 - 추가연장 결정 심의	16
	부양의무자 가족관계단절에 따른 보호 적정성 심의	16
08.18	긴급복지지원의 지원연장 결정	12
09.02	긴급지원생계지원 사후조사 결과 심의 - 추가 연장 결정 심의	13
	긴급지원생계지원 사후조사 결과 심의 - 추가 연장 결정 심의	13
	2015년 3분기 자활기금 용자금 용자대상 심의	13
	자활기금 용자금 연체금 결손 및 면제 처리	13
09.21	긴급지원생계지원 사후조사 결과 심의 - 추가 연장 결정 심의	15
	긴급지원생계지원 사후조사 결과 심의 - 추가 연장 결정 심의	15
	기초수급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 부양의무자 관계단절에 따른 보호적정성 심의	15
10.14	긴급지원사업 사후 조사 결과 심의 - 적정성 결정	15
	긴급지원생계지원 사후 조사 결과 심의 - 추가 연장 결정	15
	자활기금 용자금 이행연기 특약체결 심의	15
	기초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관계단절 및 멸실인정 차량의 일반재산 적용에 따른 보호적정성 심의	15
11.24	긴급복지지원의 지원연장 결정 심의 - 추가연장 결정	15
	2015년 연말 소외계층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심의	15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부양의무자 관계단절 및 재산범위 특례 적용에 따른 보호적정성 심의	15

12.07	긴급지원생계지원 사후 조사 결과 심의 - 추가 연장 결정	15
	긴급지원사업 사후 조사 결과 심의 - 적정성 결정	15
	2015년 4분기 자활기금 용자금 용자대상 심의	15
	자활기금 용자금 이행연기 특약체결 심의	15
	기초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관계단절에 따른 보호적정성 심의	15

다. 실무분과

- 실무분과위원 : 55명
- 실무분과 : 6개 분과
(영유아·아동·청소년분과, 노인분과, 여성분과, 장애인분과, 사례관리분과, 통합서비스분과)
- 회의개최 : 22회

라. 기타회의운영

- 분과기획사업 심사회의회 : 2회
-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T/F회의 : 5회
-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사진공모전 심사회의회 : 1회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운영위원회회의 : 1회 (2건 접수. 12월중 개최 예정)

2.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가. 사업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 선임 할 수 있음.
- 법인의 주 사무소가 동해시인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 후보자 심사 및 추천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운영

나. 사업내용

- 수요조사 : 동해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의 추천인원 및 예상시기 조사
- 이사 후보자 모집 : 이사모집 공고게재 및 접수 타 기관 추천 요청
- 심사 : 법정 결격사유 확인 및 운영위원회회의 개최
- 인력풀 구성

다. 사업실적

- 사업기간 : 2015년 연중
- 외부추천이사 요청 기관
 - 사회복지법인 열린어린이집 : 1명 선임 요청 -> 2명 추천 (현재 진행 중)
 - 사회복지법인 튼튼나라어린이집 : 1명 선임 요청 -> 2명 추천 (현재 진행 중)
- 소요예산 : 비예산

3. 분과기획사업

가. 사업목적

- 실무분과 중점 추진사업을 통하여 시범적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방안 제시
- 분야별로 구성된 실무분과의 활발한 논의구조를 통하여 새로운 지역 의제
- 개발 및 사회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방안 모색

나. 사업목표

- 각 분과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여 분과의 협력 강화
-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류, 상호협력체계 강화

다. 사업실적

- 사업기간 : 2015년 5월~12월 (각 실무분과 사업제안서 심의 후 선정)
- 선정분과
 - 장애인분과 - 15.05.29 진행 / 동해시 ‘장애인 어울두리 걷기’ (1,960천원)
 - 영유아아동청소년분과
 - 15.08.17 진행 / 매직쇼 & 어린이독서인형극 ‘꿈지와 왕콧구멍’ (1,996천원)
 - 노인분과
 - 15.11.27~12.09 진행 / 독거노인 화재예방 사랑 잇기&가두 캠페인 (1,998천원)
- 소요예산 : 5,954천원

4. 분과연합사업 - 제2회 동해시 사회복지 어울림한마당

가. 사업목적

- 시민들에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보제공과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참여 기회 제공

나. 사업목표

-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간의 네트워크 강화 와 연대의식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동해시 복지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복지서비스 체감도와 질 향상 도모

다. 사업실적

- 사업기간 : 2015년 10월 31일
- 사업대상 : 1,000여명 / 동해시민, 동해시 관내 협의체 소속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
- 사업내용
 - 6개 분과 및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체험, 홍보, 먹거리, 사진전시, 놀이마당 부스 운영
 - 참여 기관 동아리 발표회
- 사업장소 : 북평 전천강 야외공연장 일대
- 소요예산 : 22,800천원

5. 교육사업-민관합동교육(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 실무시책교육)

가. 사업목적

- 동해시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이 먼저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고,
- 지역사회의 민·관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 강의 :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사회서비스 패러다임과 실천 전략 (2h)
- 교육 : 동해시 사회복지 실무시책 (복지과, 가족과, 보건소 소관 업무)

다. 사업실적

- 사업기간 : 2015년 04월 10일(금) 15시~18시
- 사업대상 : 실과소동 : 6급 이상 (필수), 7급 이하 (교육희망자) 150여명,
관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150여명
- 사업장소 : 동해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소요예산 : 833천원

6. 교육사업-제2회 강원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가. 사업목적

- 선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질적인 활동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 구체적인 활동방법들을 적용가능 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토론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비전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업내용

- 선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 및 주제발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사례
(활성화 위한 노력, 민관협력 방안)
-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토론

다. 사업실적

- 사업기간 : 2015년 08월 27일~28일
- 사업대상 : 강원도 협의체 위원 및 관련 공무원 (관련 실무자)
- 사업장소 : 현진관광호텔 4층
- 사업예산 : 3,000천원

7. 전국대회 및 선진지견학

가. 사업목적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사회보장환경 변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등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공유·확산
- 전국협의체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선진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인 활동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표, 실무협의체 및 분과위원의 참여 확대 및 적극적인 위원 활동의 동기부여 기회 제공으로 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
- 대표, 실무협의체 및 분과위원간, 민과 관의 유기적인 의사소통 기회 마련

나. 사업실적

- 사업기간 : 2015년 10월 22일~24일
- 사업대상 : 대표·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4명), 실무협의체 위원(1명), 실무분과장(1명), 실무분과 위원(1명), 관련 공무원(2명), 상근간사(1명)
- 사업장소 : 제주 그랜드호텔 연회장 및 제주문화탐방
- 사업예산 : 4,614천원

8. 기타 홍보사업

가.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 협의체 운영 전반 (회의, 행사 일정, 자료)게시

나. 동해시 해오름 천사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의안3〉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6년도 운영계획(안) 승인

I

운영개요

1. 법적근거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이하 생략 ~

③ ~ 이하 생략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7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7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이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이하 생략 ~

다.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2. 운영목적

- 가.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지역 복지계획수립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 참여복지 구현
- 나.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 기반 마련으로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대응하고, 주민들이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한다.
- 다.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
- 라.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3. 운영목표

- 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심의, 평가 및 건의
- 나. 사회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복지정책의 수립, 모형개발 및 건의
- 다.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민·관 협력 서비스 체계를 구축
- 마.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역복지 특화모델 등 제시

4. 운영기간

⇒ 2016. 1. 1. ~ 2016. 12. 31.

5. 운영내용

가. 회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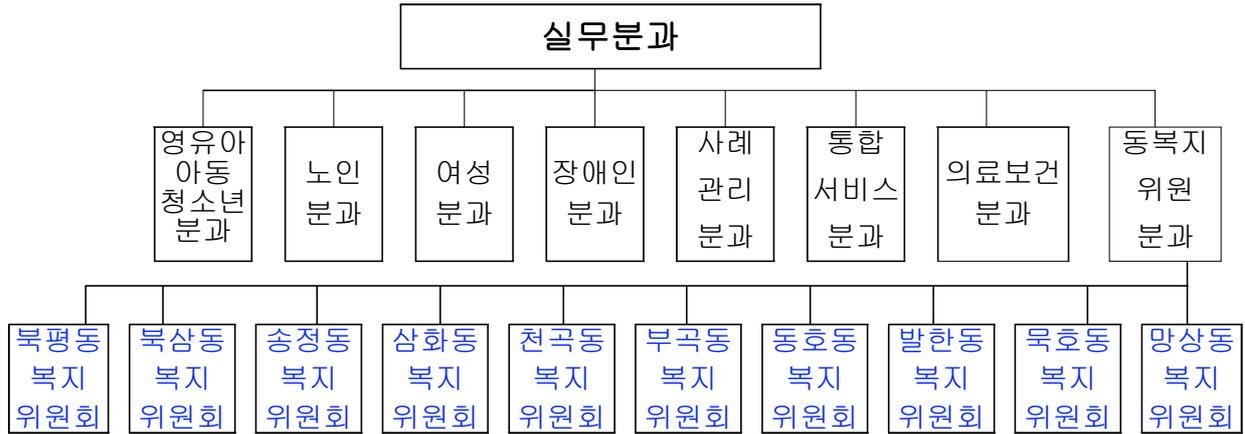
- 지역사회복지전반에 대한 협의, 심의, 건의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별로 회의 운영

나.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계획 심의

- 2016년도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 및 2017년 계획 수립 및 심의

다. 실무분과

- 각 분과별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추대
- 추가분과구성
 - 분과명 : 동복지위원분과
 - 위원구성 : 각 동복지위원회장 10명
 - 동복지위원분과 아래 각 동복지위원회 구성 (10개동, 5~6명 내외)



라. 상근간사 : 1명

II 세부운영계획

1. 회의운영

가. 대표협의체 회의

- 회의 개최 : 분기별 1회 (연 4회)
- 회의 내용

예정일	주요안건
2016.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협의체 결산보고 ○ 2015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평가 및 심의
2016.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기획사업 추진상황 보고 ○ 사회보장 심의
2016.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중간평가 ○ 제3회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추진상황 및 결과보고 ○ 사회보장 심의
2016.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협의체 운영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심의 ○ 사회보장 심의

나. 실무협의체 회의

- 회의 개최 : 연 6회
- 회의 내용

예정일	주요안건
2016. 2월	○ 2015년 협의체 결산보고 ○ 동복지위원회 및 지역자원연계 T/F 구성 ○ 실무협의체 위원 위촉식
2016. 4월	○ 분과기획사업 계획(안) ○ 민관합동 워크숍 계획 보고
2016. 6월	○ 민관합동 워크숍 결과 보고 ○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계획(안) ○ 2016년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 계획(안)
2016. 8월	○ 2016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중간평가 ○ 제3회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추진상황 보고
2016. 10월	○ 제3회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추진결과 보고 ○ 2017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안)
2016. 12월	○ 2017년 협의체 예산 및 운영계획(안)

다. 실무분과 회의

- 회의 개최 : 연 6회
- 회의 내용

예정일	주요안건
수시 (홀수 달, 각 분과별 6회 이상)	○ 각 분과별 협의체 사업 논의 ○ 각 분과별 연차별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논의 ○ 분과기획사업 논의 ○ 각 분과별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세부계획 논의 ○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방안 논의 등

2.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

- 각 분과별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
 - ⇒ 실무협의체에서 분석·평가·검토
 - ⇒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확정

3. 협의체 활성화 사업

가. 민·관 합동 워크숍

- 일 정 : 2016년 5월경, 11월경
- 횟 수 : 2회
- 대 상 : 협의체 위원
- 내 용 : 협의체 활성화 및 복지역량강화

나. 분과기획사업

- 계획구상 및 공모 : 2016. 1월~5월
-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 6월
- 사업시행 : 6월 이후
- 내 용 : 다각적인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각 분과특성에 맞는 기획사업

다. 제3회 동해시사회복지 어울림 한마당

- 일 정 : 2016.09월경
- 대 상 : 동해시관 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관련공무원, 동해시민
- 내 용 :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상담, 체험부스 운영, 바자회, 지역복지문제 관련 포럼

라. 강원도 워크숍 및 전국대회 참가

- 일 정 : 2016.06월, 10월경
- 대 상 : 협의체 대표위원장, 실무위원장, 분과위원, 담당공무원, 간사
- 내 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네트워크 강화 및 비전 공유

마. 협의체 우수위원 선진지 견학

- 일 정 : 2016.10월경
- 대 상 : 협의체 우수위원
- 내 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참여 동기부여 및 타 시·군 벤치마킹 및 연수

바. 지역자원연계사업

- 일 정 : 2016년(연중)
- 횟 수 : 수시
- 대 상 : 지역자원연계 T/F, 동복지위원회
- 내 용 : 공공과 민간 복지 간 자원 연계·협력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및 효과적인 운영과 정착을 도모

4. 외부추천이사 운영위원회

- 외부추천이사후보자 연중수시 모집을 통해 추천 가능한 인력풀 구성

5. 홍보사업

- 홈페이지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업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현황안내

<의안4>

2016년도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승인(안) 심의

◎ 예산 총 칙 ◎

제1조: 2016년도 예산총액은 82,080천원으로 한다.

제2조: 2016년도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합 계		82,080	82,080	0	합계		82,080	82,080	0	
세 입	보조금수입	82,080	82,080	0	세 출	사 무 비	소 계	47,168	46,367	801
	경산보조수입	82,080	82,080	0			인 건 비	29,448	28,497	951
							운 영 비	5,070	6,220	△1,150
							업무추진비	12,650	11,650	1,000
자본보조수입	0	0	0	사업비		34,912	35,713	△801		